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- 110호

『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2년 6월 8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민축구단 안정적 운영 및 육성을 통하여 지역축구발전과 시민여가체육활성화를 기하기 위함.
- 나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“인천광역시시립문학경기장”을 “인천축구전용경기장”로, “(주)인천시민프로축구단”을 “(주)인천유나이티드”로 명칭을 변경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육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.(안 제3조제2항제3호)

다. “축구전용경기장”을 “인천축구전용경기장”으로 명칭을 변경함.
(안 제3조제3항, 안 제5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(참조 : 시의회 문화 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thisman777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”로, “인천광역시시립문학경기장”을 “인천축구전용경기장”로, “인천시민프로축구단(이하 “시민축구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인천시민프로축구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시민축구단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인천시민프로축구단(이하 “시민축구단”이라 한다)”로, “(주)인천시민프로축구단을”을 “(주)인천유나이티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, “50인”을 “50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3조제3항 중 “축구전용경기장”을 “인천축구전용경기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“인천광역시시립문학경기장”을 각각 “인천축구전용경기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인천광역시시립문학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축구발전과 시민여가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시민프로축구단(이하“시민축구단”이라 한다)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 (목적) ----- <u>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인천축구전용경기장</u> ----- ----- ----- <u>인천시민프로축구단</u> ----- ----- -----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 <u>시민축구단</u> ”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, 단체,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(주)인천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. 2. “ <u>시민축구단서포터즈</u> ”라 함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,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<u>50인</u>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“ <u>인천시민프로축구단(이하 “시민축구단”이라 한다)</u> ”----- ----- (주)인천유나이티드를 ----- 2. ----- <u>란</u> ----- ----- ----- <u>50명</u> ----- -----
제3조(시민축구단 육성) ① (생략) ②시장은 시민축구단의 <u>다음 각 호의 1에</u>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 ~ 2. (생략) 3. (<u>신설</u>) ③시장은 <u>축구전용경기장</u> 및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	제3조(시민축구단 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 범위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/u> ③----- <u>인천축구전용경기장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제4조(사용료 감면)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(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) 다만,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제4조(사용료 감면)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경기장 우선사용)①시장은 시민축구단에게 <u>인천광역시시립문학경기장</u> 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국제대회 등으로 <u>인천광역시시립문학경기장</u>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(생략)	제5조(경기장 우선사용)①----- ----- <u>인천축구전용경기장</u> ----- ----- <u>인천축구전용경기장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및 발체사항

관계법령	☐ 국민체육진흥법률 ○ 제16조(여가체육의 육성) ☐ 국민체육진흥법률 시행령 ○ 제16조(여가체육의 육성) ☐ 스포츠산업진흥법 ○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○ 제16조(프로스포츠 육성)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[국민체육진흥법]

제16조(여가 체육의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경마와 경륜·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[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]

제16조(여가 체육의 육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
2.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
3.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
4. 경마·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
5.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

[스포츠산업진흥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, 연구사업의 지원,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(프로스포츠의 육성) ①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. <개정 2010.2.4>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.

4. 작성자

- 문화복지위원회 이 용 범 의원